

#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시리즈 소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금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질문과 답변

**Banning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Questions and answer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자주 묻는 질문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swers to frequently asked questions

2009년 출판: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2017년 출판: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3년 출판:

**체벌근절**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체벌근절(End Corporal Punishment)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최하고 멀티 파트너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www.raddabarnen.se](http://www.raddabarnen.se); [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스위스에 등록된 29개의 세이브더칠드런 단체로 구성된 재단인 세이브더칠드런 협회(Save the Children Association)의 일부이며 세계 최대 아동 권리 단체 중 하나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협회는 국제 프로그램 실행 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SCI)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본사: Rädde Barnen 107 88 Stockholm, Gustavlunds väggen 141, 16751 Bromma, Sweden.

본 번역본은 End Corporal Punishment의 허가를 받아 국제아동인권센터(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에서 번안하였습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금지가 양육자와 가족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이 소책자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금지의 이유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소합니다.



# 질문목록

## Part 1: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 8 체벌은 정말 아픈가요?
- 10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이고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 12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벌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론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 13 저는 종종 어린 사람들이 체벌을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14 어렸을 때 맞았어도 저는 아무런 악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신체적으로 훈육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까요?
- 17 아동권리에 대한 더욱 심각한 침해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집중하나요?
- 18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 20 아동을 구타하는 것과 사랑의 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벌 자체를 금지 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 23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보단 안전한 매를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 24 저의 종교는 체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 26 왜 법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그냥 양육자가 체벌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면 안되나요?

- 27 대부분의 체벌은 가정 내에서 비밀리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지하는 것이 소용이 있나요?
- 28 체벌금지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양육자와 교사의 일상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 31 이것은 백인, 유럽 중심의 문제입니다. 체벌은 우리 문화이자 전통적인 양육방식의 일부입니다. 불법화하는 것이 차별 아닌가요?
- 32 아동을 때리는 것을 포기하는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Part 2: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 36 양육자가 체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면, 아동은 결국 버릇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 39 체벌이 금지된다면 아동이 더 끔찍한 방법(정서적 학대, 굴욕, 감금 등)으로 대우받는 것은 아닌가요?
- 40 체벌이 불법이 된다면, 수많은 양육자가 기소되고 더 많은 아동이 시설에 보내지지 않을까요?
- 42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양육자가 때리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Part 1:**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 체벌은 정말 아픈가요?

네 물론이죠!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픕니다. 전세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연구를 통해 아동들은 체벌이 그들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완료된 유엔 사무총장의 아동폭력에 관한 연구는 문제의 본질과 범위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국제 연구였습니다. 연구 책임자이자 독립전문가인 Paulo Sérgio Pinheiro 교수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sup>1</sup>

“연구 과정 내내 아동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긴급하게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표현했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주는 이러한 폭력은 성인들이 이를 수용하고 심지어 찬성하는 것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고 증언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비록 새롭게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비상 사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동은 수세기 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채 성인의 손에 의해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폭력의 규모와 영향이 점차 드러나면서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습니다.”

1. Pinheiro, P. S. (2006),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Geneva: 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Study and to download the report see <http://www.ohchr.org/EN/HRBodies/CRC/Study/Pages/StudyViolenceChildren.aspx>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종종 아동과의 크기와 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 차이가 아동에게 의도된 또는 실제적인 신체적 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양육자에게 자녀를 “때릴” 때 사용한 힘에 대해 물은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다섯 명 중 두 명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정도의 힘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2</sup> 또한, 정신의학연구소(Institute of Psychiatry)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진행된 연구는 힘을 가할 때 뇌 활동의 변화가 사용되는 힘의 정도를 자연스럽게 증가시키고 힘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부정확해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sup>3</sup>

더 나아가, 성인들은 대부분 체벌로 인한 정서적 상처, 아동의 존엄성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장단기적 피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벌의 부정적인 건강, 발달, 행동적 결과를 다룬 250개 이상의 연구를 살펴봤습니다. 부정적 결과에는 정신건강 및 인지 발달의 어려움, 낮은 학교 성적, 공격성의 증가, 도덕성의 문제, 반사회적 행동 증가 등이 포함됩니다.<sup>4</sup>

2. Kirwaun, S. & Bassett, C. (2008), Presentation to NSPCC: Physical punishment, 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3. Shergill, S. S. et al (2003), "Two eyes for an eye: The neuroscience of force escalation", Science, vol. 301, 11 July 2003, p.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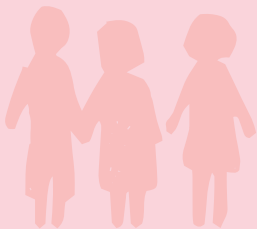
4. 자세한 내용은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summary of research on its impact and associatio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resources/research/>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무엇이고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역사상 아동인권에 관한 가장 완전한 성명서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본 협약에는 아동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이 세상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는 54개 조항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국가들이 협약을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협약이 모든 환경(가정, 대안 양육 환경, 돌봄 시설, 학교 및 사법 시스템)에서 모든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실제로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의 일반 논평 8호(2006)는 “체벌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에 관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13호(2011)에서 반복해서 해당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협약에 대한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종견해에서 차별 금지를 체계적으로 권고합니다. 다른 조약 모니터링 기관들도 점점 더 금지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 현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정기적으로 제기됩니다.



#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벌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여론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종 차별을 포함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은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야 합니다.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법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존엄성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무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체벌을 금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론보다 앞서 체벌을 금지했고, 이후 여론은 빠르게 그 변화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우리는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고 용인되었던 시대를 의문과 부끄러움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표현되는 방식과 응답자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 기존의 아동 보호가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과 금지 목적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금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질문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저는 종종 어린 사람들이 체벌을 지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때로 체벌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말하거나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거나 심지어 양육자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이해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체벌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상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것에 이미 주목했습니다('체벌이 정말 아픈가요', 8페이지 참조). 아이들이 체벌이 어떠한 이유로든 필요하고 좋다고 말할 때, 그들은 신체적으로 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다는 믿음에 둘러싸여 자랐고 이러한 믿음을 스스로 내면화합니다. 또한, 체벌하는 양육자의 태도와 행동을 흡수하고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합리화하거나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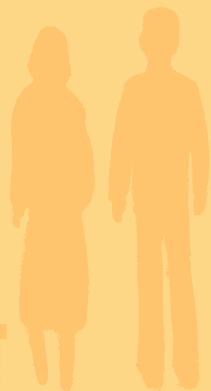
아동은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고 폭력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양육하는 것은 양육자를 비롯한 성인의 책임입니다.

# 어렸을 때 맞았어도 저는 아무런 악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신체적으로 훈육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때리거나 굴욕감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어른들이 고통을 가해야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를 때리는 어른들은 대개 어린 시절 자신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체벌 후 죄책감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을 때립니다(특히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이에 대해 이전 세대를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만연한 문화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사회는 나아갑니다. 아동은 권리주체자로 인정하려면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용을 종식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처럼 아동에 대한 폭력의 합법성과 사회적 수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렸을 때 맞았었는데 잘 자랐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잘 자랐어”라고 해도 자신이 겪은 일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종종 그들이 ‘잘 자란’ 것에 도움을 준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경험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폭력적  
‘훈육’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가장 흔한 형태의  
폭력입니다.”



# 아동권리에 대한 더욱 심각한 침해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집중하나요?

유니세프가 기록한 것과 같이 폭력적인 “훈육”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가장 흔한 폭력의 형태입니다.<sup>5</sup> 체벌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 천 명의 아동(주로 아주 어린 아동)을 죽이고 수백만 명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아동 보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체벌의 합법성은 아동의 낮은 지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아동이 완전한 권리주체자가 아닌 소유물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인간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체벌은 세계 대다수 아동의 일상적인 경험을 반영하며, 모든 경우에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합니다.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여성의 권한 부여와 권리 수용의 중심이었듯이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의 지위를 높이고 사회에서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는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어떤 국가도 아동을 성인과 함께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 척할 수 없으며, 법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상태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갖춘 척할 수 없습니다.

5. UNICEF (2014), Hidden in Plain Sight: A statistical analysi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NY: UNICEF

# 부모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극단적인 경우에만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는 아동을 부모의 재산으로 보는 것에서 그들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동은 인권을 향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집 현관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동은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아동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인을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가정사와 사생활을 더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족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부모의 기본 관심사로 삼은 부모의 책임의 개념을 장려합니다(제 18조). 어떤 사람들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을 때리는 것이 되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sup>6</sup>

“...아동 최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과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를 포함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체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체벌과 기타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포함한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와 충돌하는 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폭력적인 처벌이 가족관계의 손상과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6. 일반논평 제8호 (2006) “체벌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19조, 제28조 제2항, 제37조)”, para. 26, <http://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key-docs/CRC-general-comment-8.pdf>

# 아동을 구타하는 것과 사랑의 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벌 자체를 금지 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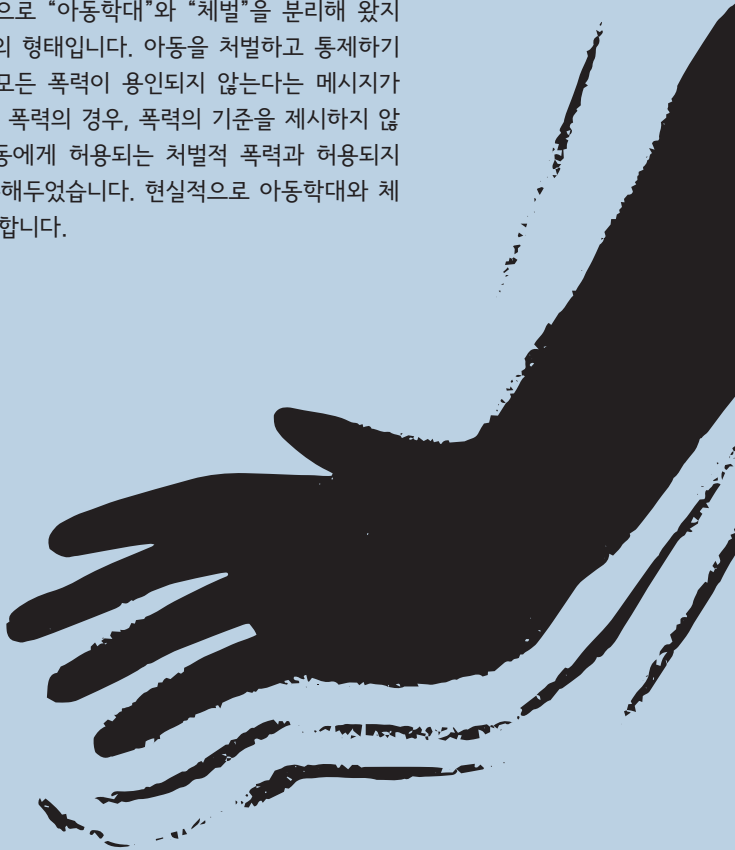
아동을 구타하는 것이 “사랑의 매”보다 신체적으로 더 아플 수는 있습니다(8쪽 ‘체벌은 정말 아픈가요?’ 참고). 하지만 둘 다 폭력의 연속선상에 있고 둘 다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합니다. 사회는 노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고 어떤 수준의 폭력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에게는 왜 그래야만 할까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상처 주는 것을 연관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랑의 매”는 최악의 모순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용어는 권리 침해를 숨길 수 있는 덮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의 “사랑하는” 의도와 폭력의 강도에 초점을 맞춰 “아동학대와 가벼운 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신의 폭력의 정도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종종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되며<sup>7</sup>, 힘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sup>8</sup> 그리고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매의 강도가 어떻게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합니다.

7. Kirwaun, S. & Bassett, C. (2008), Presentation to NSPCC: Physical punishment, British Market Research Bureau/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8. Shergill, S. S. et al (2003), “Two eyes for an eye: The neuroscience of force escalation”, Science, vol. 301, 11 July 2003, p. 187

입법자들과 정부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와 “체벌”을 분리해 왔지만, 대부분의 학대는 체벌의 형태입니다. 아동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합니다. 모든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 노인 대상 폭력의 경우, 폭력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아동에게 허용되는 처벌적 폭력과 허용되지 않는 “학대”를 임의로 구분해두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동학대와 체벌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모든 체벌을 금지하기 보단 안전한 매를 규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한’ 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리는 모든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가벼운 체벌은 이후 학대로 구분되는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위험요인이며, 힘의 증가와 사용한 힘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은 앞서 이야기 하였습니다(20쪽 ‘아동을 구타하는 것과 사랑의 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체벌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참고).

몇몇 국가에서는 아동을 때리는 데 허용되는 방법(연령,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정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는 아동 폭력에 관한 사회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시도입니다. 여성, 노인, 또는 다른 인구 집단을 폭행하기 위한 허용 가능한 방법을 정의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동 또한 폭행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성인보다 작고 약한 아동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저의 종교는 체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체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닐까요?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측은지심, 평등, 정의와 비폭력을 주장하는 세계 주요 종교들의 이상, 가치와 신념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창시자들의 모범과 가르침을 본받습니다.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 중 어떤 사람도 아동을 때렸다는 기록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는 종교적 관점은 종종 아동에 대한 권위주의적, 권력 및 통제의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맹목적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고, 신체적 처벌을 '불순종'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간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동에 대한 체벌 근절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세계종교평화회의에서 800명 이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가 모든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 '아동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다종교적 약속(교토 선언)<sup>9</sup>'을 지지했습니다.

9. 선언문 전문: <http://churchesfornon-violence.org/wp/wp-content/uploads/2012/02/Violence-Against-Children-3.pdf>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8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적 자유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제한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sup>10</sup>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sup>11</sup>

“일부에서는 처벌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정당화 문제를 제기하며, 종교적 문서의 특정한 해석이 처벌의 사용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사용할 의무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종교적 믿음의 자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만인에게 확인된 것이지만 종교나 신념의 행사는 타인의 존엄성 및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과 합치되어야 한다...”



10. 일반논평 제8호, para. 29

11. 일반논평 제8호, para. 29

# 왜 법까지 적용해야 하나요? 그냥 양육자가 체벌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면 안되나요?

모든 체벌과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을 철폐하려면 교육과 법적 금지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은 아동이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적어도 성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교육 도구이며,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은 공교육 및 양육자 교육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체벌금지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전문가, 정치인, 언론이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고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전히 허용되는 것을 양육자에게 교육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법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교육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 대부분의 체벌은 가정 내에서 비밀리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지하는 것이 소용이 있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견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 중 '성인'에 대한 폭력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법적보호를 덜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의 첫 번째 목적은 예방입니다. 즉, 아동을 해치는 폭행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법의 첫 번째 목적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정의 “사생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의 금지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민감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40쪽에 있는 '체벌이 불법이 된다면, 수많은 양육자가 기소되고 더 많은 아동이 시설에 보내지지 않을까요?'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금지법 도입에는 양육자가 비폭력적 양육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캠페인이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 체벌금지가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지 않도록 양육자와 교사의 일상적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주장은 체벌은 아동을 교육하려는 시도이기보다 어른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인 경우가 많다는 명백한 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과 기관에서 성인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인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아동에게 쏟아 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성의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아동 보호는 성인 세상의 개선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없습니다. 확 김에 아동을 때리는 어른들은 자주 죄책감을 느끼며,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아동을 때리는 사람들은 화나고 분노에 찬 아동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긍정적 훈육을 위해 체벌을 금지한 가정과 기관에서의 생활은 모두에게 훨씬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분쟁이 잦은 국가에서는 양육자와 교사를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들 자신도 폭력과 굴욕의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동의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하지만, 성인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도 사람입니다.



**“전 세계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  
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 이것은 백인, 유럽 중심의 문제 입니다. 체벌은 우리 문화이자 전통적인 양육방식의 일부입니다. 불법화하는 것이 차별 아닌가요?

아동을 때리는 것이 문화적 자긍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백인의 전통이며, 노예 제도, 식민주의, 일부 선교적 가르침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징벌"에 대한 영국의 변호는 전 세계 법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육체적인 처벌을 거의 또는 전혀 받지 않는 유일한 문화는 모든 인간 문화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화 중 하나인 소규모 수렵 채집(hunter-gatherer) 사회입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도시화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이며 전 세계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자신의 전통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의절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체벌을 의절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인종, 문화, 전통,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 아동 체벌을 폐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법부의 신체적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불법화되었습니다.

# 아동을 때리는 것을 포기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정치인을 포함한 성인들이 이 문제를 쉽게 접근했다면, 우리는 아동이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받고 법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래 전에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아동이 성인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훈육”이나 통제라는 이름으로 아동을 때리고 다치게 하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i) 개인적인 경험.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양육자에게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양육자는 자신의 자녀를 때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양육자나 자신의 양육 방법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정치인, 오피니언 리더, 아동 보호분야의 종사자 등)이 체벌을 평등과 인권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양육자는 사회적 기대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해야 할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아동들과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가 왔습니다.





(ii) 어른들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참다 못해 아동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른들은 아동을 때리는 것이 아동을 “훈육” 하려는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아동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다루는 방법으로 때리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과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하는 권리에 대한 공교육과 인식 제고에 투자한다면, 양육자는 자녀를 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iii) 대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법률 개혁에는 성인이 아동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매우 다양한 방법에 대해 양육자, 아동 및 사회 전반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Part 2:**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것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 양육자가 체벌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면, 아동은 결국 버릇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훈육은 처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훈육은 힘에 기초하지 않고 이해, 상호 존중, 관용, 양방향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으로부터 나옵니다. 처음에 영아는 성인에게 완전히 의존적이지만 성장하면서 성인, 특히 양육자에게 의지하여 스스로 달성해가는 성숙을 위해 안내와 지원을 받습니다. 체벌은 아동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동을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양육자가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아동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을 때리는 것은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동이 다른 아동이나 어른을 때려서는 안 되고, 어른들도 다른 어른을 때려서는 안 되지만, 몸집이 크고 강한 어른이 몸집이 작고 취약한 아동을 때려도 괜찮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동은 양육자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존중을 두려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좋은” 행동은 아동이 벌을 피하는 것이지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은 사람과 사물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할 때 진정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양육자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때릴 때, 자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폭력이 분쟁을 다루는 데 허용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자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완전성을 존중할 때 자녀는 존중을 배웁니다. 양육자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깎아내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체벌과 기타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은 긍정적인 형태의 훈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훈육은 아동을 버릇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국가는 긍정적인 양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양육과 폭력 없는 교육을 지지하는 다양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거나 번역할 수 있습니다.



# 체벌이 금지된다면 아동이 더 끔찍한 방법(정서적 학대, 굴욕, 감금 등)으로 대우받는 것은 아닌가요?

아동은 체벌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형태의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이나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개혁은 아동과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증진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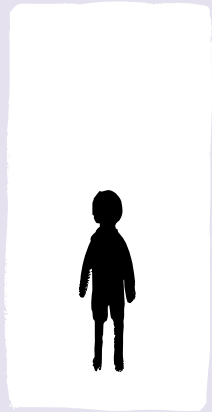
양육자는 자녀가 삶에서 가능한 한 최고의 출발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때리거나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학대하는 양육자는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 속상함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양육자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녀와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환영할 것입니다. 아동을 때리고 모욕하는 것에서 벗어나 그들을 같은 사람이자 권리 주체자로 인정하는 것은 모두의 가정생활을 향상시킵니다.

# 체벌이 불법이 된다면, 수많은 양육자가 기소되고 더 많은 아동이 시설에 보내지지 않을까요?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은 더 많은 양육자를 감옥에 보내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가 아동과 긍정적인 비폭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양육자에 대한 기소가 증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육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듯, 아동을 때리는 것 역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가정의 사적 영역에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당국을 포함하여 아동 보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지침은 법 집행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소 및 기타 공적 개입은 심각한 피해로부터 필요한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이상 아동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논평 8호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벌금지로 인해 양육자가 대량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두 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1. 최소 기준(De Minimis) 원칙 - 이는 법이 사소한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성인 간의 경미한 폭행이 법정에 회부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성인이 아동에게 '경미하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자녀의 의존성과 가족 관계의 고유한 친밀성을 고려해 양육자를 기소하거나 가정생활에 개입하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각한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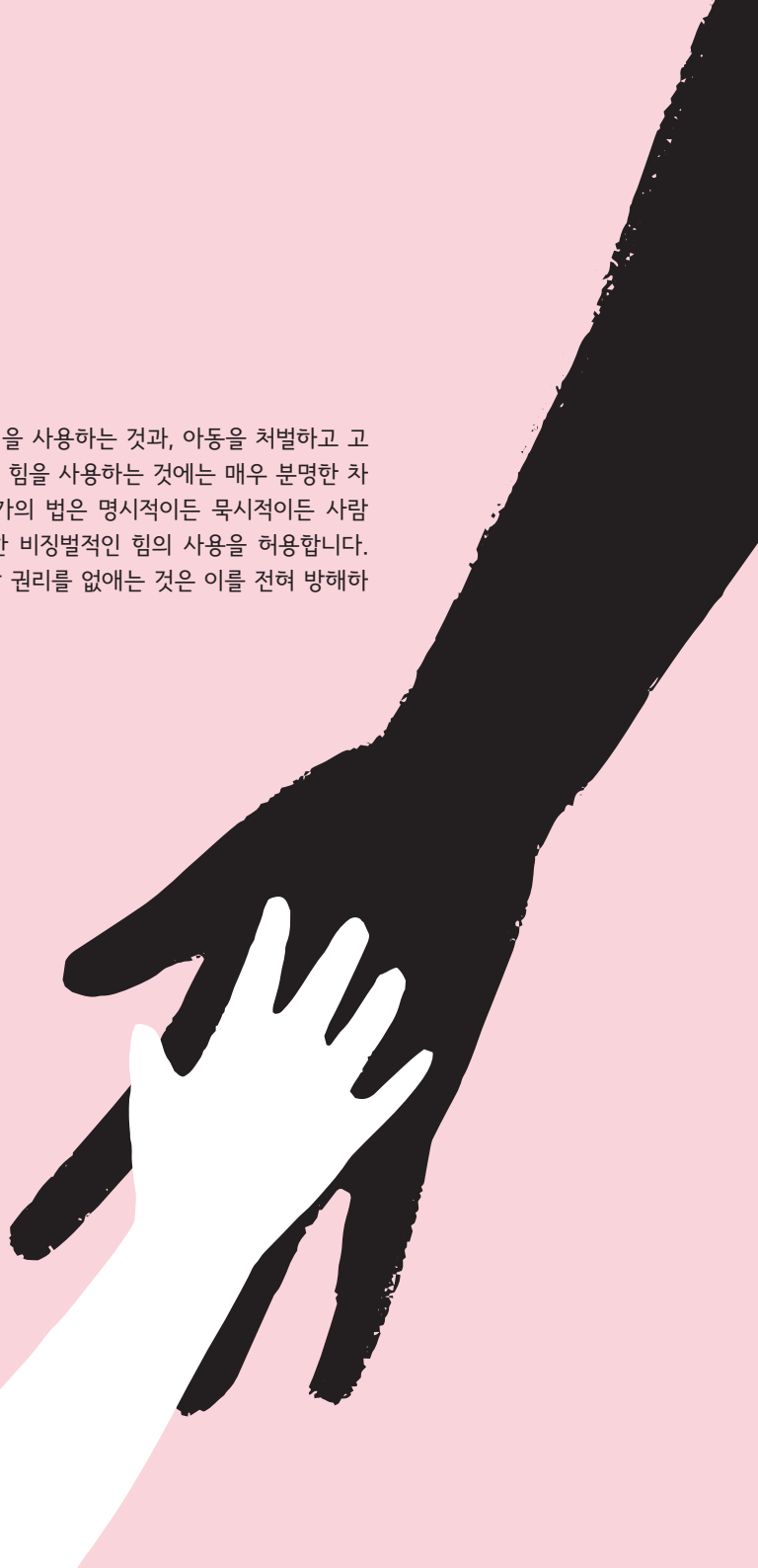
# 자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양육자가 때리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아동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때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양육자에게 조언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당연히 안됩니다.

어린 아동, 특히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자는 항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육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동이 불을 향해 기어가거나 위험한 길로 달려가면 양육자는 자연스럽게 아동을 붙잡고, 안고, 위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등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을 막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때려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자가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완전히 약화시킵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동,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빈번한 물리적 행동과 개입을 요구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고통, 불편함 또는 굴욕감을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징벌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보호적인 물리적 행동과 징벌적인 폭력의 차이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아동과 관련된 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과, 아동을 처벌하고 고의적으로 상처 주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징벌적인 힘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처벌을 위해 힘을 사용할 권리를 없애는 것은 이를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 체벌근절 웹사이트: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체벌 금지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아래 예시 포함)는 체벌근절(End Corporal Punishmen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보고서
- 체벌의 적법성과 법률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즉각적인 기회를 설명하는 글로벌 및 지역별 표
- UN과 지역 인권 시스템이 체벌을 다루는 방법과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법 개혁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 체벌의 확산과 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체벌이 아동, 성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요약
- 금지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자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글로벌 및 지역 옹호 자원



# 이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아동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체벌근절(End Corporal Punishment)

체벌근절은 체벌의 보편적인 금지와 철폐를 촉진하고 법률 개혁의 모든 측면에 대한 기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

[info@endcorporalpunishment.org](mailto:info@endcorporalpunishment.org)

[www.twitter.com/Glencorpun](https://www.twitter.com/Glencorpun)

[www.facebook.com/Glencorporalpunishment](https://www.facebook.com/Glencorporalpunishment)

##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옹호합니다. 1979년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은 스웨덴이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 기관은 체벌의 법적 금지 및 철폐 문제를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fo@rb.se](mailto:info@rb.se)

[www.raddabarnen.se](http://www.raddabarnen.se)

[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http://resourcecentre.savethechildren.net)





**End Corporal  
Punishment**



**Save the Children**